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의안번호 : 제580호
- 제출일자 : 2019년 3월 29일
-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2. 제 안 사 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 서울대공원 내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해당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원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30 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 (안 제20조제4항제1호)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20조제4항제2호)
-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라. 서울대공원 내의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의 이용료 범위 규정을 신설 함(안 별표 2)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할 경우 2019년 말까지 공원에서 입장료의 30%, 이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 신설된 서울대공원 야구장 이용료 부과 범위를 정하여 요금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제로페이 사업 개요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는 2018년 11월 ‘서울페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제로페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제로페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존력 제고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 성과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일 기준 소상공인 사업장 40만개 중 25%에 해당하는 10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음¹⁾.

1)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10만호점 돌파, 2019. 4. 8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

- 당초 제로페이 사업은 인프라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총 7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2)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매년 연간 40억원 내외의 운영비용을 예상하고 있음.

〈제로페이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추경)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000	3,867	300	300	300
인프라 보급 지원	2,770	3,500	-	-	-
활성화 지원	230	367	300	300	300

참고)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이외에도 서울시는 2019년 2월 말까지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 17억 7천3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음.

〈광고매체별 사용예산〉 (단위: 백만원)

총계	지면광고 (신문, 잡지)	방송광고 (TV, 라디오)	온라인매체 (인터넷, 포털 등)
1,773	841	377	555

※ 2019. 2. 28기준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직영, 민간위탁,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³⁾,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 서울시 18건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2018. 11. 9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406)

3)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2019. 3. 1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507)

-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 관리 시설의 수입 감소규모는 연간 88억 4천2백만원이며, 자치구 시설은 연간 33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입 감소액은 418억 4천 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⁴⁾.

제로페이 할인 적용시 수입감소 추계

◆ 서울시('19. 2. 13. 기준)

- 추계기준 : '18년 연간 수입액에 시설별 할인율(5% ~ 30%) 및 제로페이 이용률(30%~70%) 감안 연간 감소액 추계
- 감소규모 : 연간 8,842백만원 (※시설별 적용 할인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손실액(4,553백만원)은 전액보전
 - 직영은 우리시 세입감소분(605백만원)으로 손실보전 불필요

< 운영유형별 수입감소규모 추계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직영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연간	8,842	1,037	444	7,361
7개월 (5월~12월)	5,158	605	259	4,294

※ 연간 감소분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감면 시행기간 7개월(5월~12월) 환산하여 추계

◆ 자치구('19. 1.24. 기준)

- 추계기준 : '18년 연간 수입액에 시설별 할인율(10%) 및 제로페이 이용률(30%) 감안 연간 감소액 추계
- 감소규모 : 연간 33,000백만원 (※ 시설별 적용 할인율 및 이용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3쪽

-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할인으로 인해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손실액과 자치구 수입 감소금액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 연간 375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4)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2019. 3. 1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507)

2)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0조제4항 신설)

□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 적용대상

- 본 조례안은 공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제로페이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30%를 감면하고, 보라매공원 축구장,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그리고 3곳의 테니스장 이용료 3%를 감면하는 것을 추산하여 작성된 것임.
- 그러나 본 조례 [별표 2]에는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축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등 체육시설과 야영장 등 여가시설이 포함되어 총 16개 종류 시설과 남산공원 차량통행료가 감면 대상임.
- 이중 서울시 관리공원내 체육시설만 살펴보다라도 이용료 부과시설은 78개로 대부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3개 있음⁵⁾. (첨부 1 참조)
- 또 다른 시설로 야영장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을공원 캠핑장과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중인 중랑캠핑숲, 서울대공원 캠핑장이 있음.
- 공원시설중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민간결재 시스템 이용시설(파크골프장, 노을캠핑장), 고지서로

5) 서울시 공원내 체육시설 현황, 2018. 8. 23, 시의원 요구자료 184번(김태수의원)

납부하거나 실비개념으로 부과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상시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제로페이 결제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

-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원시설 입장료나 이용료 감면으로 인해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적인 추산액은 제시되지 않았음.
- 시 직영 공원시설의 경우는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로페이 결제 할인을 시행하는 민간위탁시설과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전이 필요함.
-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 손실보전이 가능하지만,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경우는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 본 조례안의 취지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예산으로 지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에도 별도의 비용이 들고, 할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 보전이 필요하지만, 손실 보전 근거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서울대공원 야구장 현황

-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성인야구장 1면, 리틀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야구장으로 2014년부터 체육진흥과 예산 46억 6천7백만원을 재배정받아 조성하였음. 2017년 3월 준공되었으나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2년동안 정식 운영을 못하고 방치되었음.
- 서울대공원에서는 2019년 2월 13일 합동점검을 통해 야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선수보호 안전펜스 추가설치, 관람객 보호를 위해 안전망을 15~30m로 추가 설치, 직영운영에 따른 사무실 설비 등의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내부진단을 내린바 있음⁶⁾.
-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안전시설 정비, 인력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9년 4월 6일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결정하였으며, 직영운영을 준비중 임.
-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준공 후 2년간 방치된 시설로, 시설 합동점검 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관람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운영관리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개장 결정을 하였으나, 당초 우려했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개장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야구장 운영·관리는 전문성과 운영관리 경험이 필요한 사항이나 야구장 운영 경험이 없는 서울대공원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임.

6) 이광성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354번),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계획, 2019. 3. 4

참고) 남산공원에 위치한 장충리틀야구장은 그동안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위탁운영 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위탁운영을 중지 하였으며, 본 야구장은 철거 후 남산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철거 이전에 임시 사용 요청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임시 직영운영 하고 있음.

4) 서울대공원 야구장의 적정 이용요금

- 서울시에는 목동, 잠실, 고척스카이돔 등 전문체육시설 3개소와 신월, 구의, 육사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13개소 등 총 16개의 야구장이 있으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첨부 2 참고)

- 구의, 신월야구장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체육경기를 할 경우와 연습경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행사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음. (첨부 3 참고)

〈구의, 신월야구장 이용요금〉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일반행사	비 고
구의야구공원	평일 주간	70,000	63,000(1회차당)	200,000	야간은 평일 주간요금의 30% 가산, 체육행사 경기 회차당(2.5시간)
	토, 공휴일 주간	91,000	81,900(1회차당)	260,000	
신월야구공원	평일 주간	70,000	63,000(1회차당)	200,000	
	토, 공휴일 주간	91,000	81,900(1회차당)	260,000	

- 한강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 난지, 광나루 야구장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난지 성인 야구장은 3시간 8만원, 어린이야구장은 3시간 2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생활체육 야구장 기준 이용요금〉

체육시설 조례		한 강		자치구	
시설명	요금	시설명	요금	시설명	요금
구의	63,000원	광나루 성인	20,000원	살곶이	55,000원
신월	63,000원	난지 성인	80,000원	송파유소년	150,000원
목동	90,000원	광나루 어린이	8,000원/2시간	불암산	80,000원
잠실, 고척돔	315,000/일	망원 어린이	8,000원/2시간	육사	114,400원

(평일 3시간 야구경기 기준)

-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구장은 불암산 야구장 8만원, 육사야구장 11만4천4백원, 송파유소년 야구장 15만원 등 자치구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관리 야구장보다 보다 높은 이용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음.

〈체육시설조례에 따른 야구장 이용요금〉

(단위: 원)

야구장	체육시설 조례 (3시간)		도시공원조례 (신설) 서울대공원 야구장	
	체육경기	체육행사		
구의야구장	42,000~54,600	63,000~81,900	성인	42,000~54,600
신월야구장	42,000~54,600	63,000~81,900	리틀	21,000~27,300

-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체육시설조례를 준용하여 성인야구장 3시간 요금의 범위를 4만2천원에서 5만4천6백원(요금 42,000원), 리틀야구장은 2만1천원에서 2만7천3백원(요금 21,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야구장의 이용요금은 규모와 시설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경기와 행사 등을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 인조잔디구장으로 기존의 시설비와 향후 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한 시설정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요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4월 임시운영 결과 2개 야구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말을 제외하고는 1팀 사용에 불과함. 여성 전용 야구장은 개장 첫날 한국여자 야구연맹에서 시범경기 1회만 사용하였을 뿐 여성야구단이 추가 사용신청한 것은 없으며, 리틀야구장은 안양, 과천의 리틀야구단에서만 접수를 하고 있어 서울시 야구인원의 이용은 전무한 실정임.

- 또한 서울대공원 야구장에서 기타행사를 유치할 경우 야구 이외의 행사를 제어할 근거가 없으며,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야구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바 기타행사에 대한 보다 면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임.

첨부 1)

시 관리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 현황

기관	공원명	시설명	규모	사용기준	이용료	관리구분	수탁자
이용료 부과시설: 78개, 사용수익허가시설: 13개							
동부사업소	보라매공원	축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55,000	직영	
		테니스장	7면	1회2시간(주간)	8,000	직영	
	서울숲	테니스장	5면	1회2시간(주간)	8,000	직영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중부사업소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9면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사)대한테니스협회
		국궁장 (석호정)	1개소	1회(3시간)	3,000	직영	
서부사업소	월드컵공원	축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55,000	위탁	마포구청
		테니스장	2면	1시간(주중)	4,000	직영	
		파크골프장	1면	1시간	4,000	직영	
		농구장	일반	1시간	8,000	직영	
서울시설단	서울어린이대공원	테니스장	3면 실외2/실내1	1면2시간(실외)	8,000	위탁	오○○
				1면2시간(실내)	25,000		
		풋살장	2면	1회2시간(10인풋살)	25,000	위탁	
잔디구장	1면	2시간(체육행사)	120,000	직영			
종로구	삼청공원	테니스장	2개소	1회1시간(주간)	6,600	위탁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	훈민대왕기념공원(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4면(실내)	1시간(일반체육)	55,000	위탁	중구시설관리공단
		대체육관	6면(실내)	1면2시간(배드민턴)	27,500	위탁	
용산구	응봉근린공원	테니스장	12면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김○○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배드민턴체육관	6면	1회2시간(평일)	2,500	위탁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	축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55,000	위탁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풋살장	1면	1회2시간(주간)	27,500	위탁	
		다목적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27,500	위탁	
		테니스장	4면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정구장	2면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중랑구	용마도시자연공원(용마폭포공원)	축구장	1	1회4시간(평일)	150,000	위탁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테니스장	3	1회2시간	8,000	위탁	김○○
		인공암벽장	30x17.3(외부)	평일/성인	2,000	위탁	서울산악연맹
	봉화산근린공원	신내다목적체육관	8	1회3시간(평일)	2,000	위탁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목동다목적체육관	8	1회3시간(평일)	2,000	위탁	

기관	공원명	시설명	규모	사용기준	이용료	관리구분	수탁자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1면	대관(평일)	59,000	위탁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배드민턴 전용구장	9면	학생체능단	25,000	위탁	
		테니스장	4면	1시간(평일)	5,000	위탁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축구장	1면	1일2시간(체육행사)	55,000	위탁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족구장	1면	1일1시간	4,000	위탁	
		골프연습장	72타석	1일1회1시간	20,000	위탁	
		실내배드민턴장	8면	성인 일일사용료(평일)	2,000	위탁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축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55,000	위탁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배드민턴장	6면	1회(평일,성인)	2,300	위탁	
노원구	초안산근린공원	축구장	1면	평주(2시간)	55,000	위탁	노원구서비스공단
		풋살장	1면	평주(2시간)	25,000	위탁	
		테니스장	4면	평주(2시간)	8,000	위탁	
		배드민턴장	10면	평주(2시간)	2,000	위탁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축구장	1면	평주(2시간)	55,000	위탁	
		테니스장	3면	평주(2시간)	8,000	위탁	
		풋살장	1면	평주(2시간)	25,000	위탁	
		야구장	1면	평주(2시간)	80,000	위탁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배드민턴장	13면	평주(2시간)	2,000	위탁	
		배드민턴장	7면	평주(2시간)	2,000	위탁	
은평구	향림공원	축구장	1면	2시간(주간)	77,000	위탁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체육관	1면	1시간(주간)	60,000	위탁	
		보조체육관	1면	1시간(주간)	20,000	위탁	
		수영장	1면	오전중2시간	26,000	위탁	
		실내테니스장	3면	1시간(주간)	10,000	위탁	
서대문구	궁동근린공원	공동산체육관(실내배드민턴장)	5면	1인2시간	1,400	위탁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백련근린공원	가좌테니스장	2면	1회2시간(실외)	12,000	위탁	서대문구테니스협회
마포구	성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8면	2시간(평일,성인)	2,500	위탁	마포스포츠클럽
양천구	계남근린공원	배드민턴장	18면(실내)	1일(평일/성인)	3,000	위탁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	우장산	축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55,000	직영	
		테니스장	4면	1회3시간(주간)	11,000	직영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3면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구로구테니스연합회
금천구	관악산(금천체육공원)	독산배드민턴체육관(실내)	8면	1인3시간(06:00~22:00)	일반3,000 구민2,000	위탁	금천구배드민턴연합회
	관악산(독산자연공원)	독산테니스장	6면	평일주간시간당(06:00~18:00)	2,000	위탁	금천구테니스연합회

기관	공원명	시설명	규모	사용기준	이용료	관리구분	수탁자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풋살장	1면	1회2시간 (10인풋살)	25,000	직영	
동작구	노량진 근린공원	테니스장	5면(1개소)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개인
	현충원 근린공원	사당종합체육관	1개소	1회2시간(주간)	3,300	위탁	시설관리공단
관악구	관악산 (선우지구)	테니스장	3면	1회2시간(평일)	8,000	위탁	김○○
	관악산 (난우지구)	테니스장	2면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김○○
	관악산 (약수암지구)	축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45,000	위탁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산 (낙성대지구)	축구장	1면	1회2시간(주간)	50,000	위탁	
		테니스장	4면	1회1시간(주간)	5,000	위탁	
	관악산 (청룡산지구)	실내배드민턴장	4면	1회2시간(주간)	1,600	위탁	
	관악산 (문성지구)	실내배드민턴장	6면	1회2시간(주간)	2,200	위탁	
	상도 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10면	1회2시간(주간)	2,200	위탁	
장군봉 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4면	1회2시간(주간)	1,600	위탁		
서초구	천마공원	축구장	1	1회2시간(주간)	55,000	위탁	
	오금공원	테니스장	2면	평일2시간	8,000	위탁	
강남구	도곡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4면	평일 1시간	2,000	위탁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	일자산 도시자연공 원	제1체육관	배드민턴장8 면	1회3시간(주간)	2,400	위탁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제2체육관	탁구대4대, 헬스장	1일(주간)	1,500	위탁	
	명일 근린공원	테니스장	6면	1회2시간(주간)	8,000	위탁	강동테니스연합회

첨부 2)

서울시 야구장 현황

(2018. 12. 31. 기준)

시군구	시설명	소유기관	관리주체	중앙길이 (m)	면적 (㎡)	준공 연도	분류
소 계	16개소						
중구	장충리틀야구장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리틀야구연맹위탁)	65	3,728	1972	생활
성동구	살곶이야구장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87	7,002	2015	생활
광진구	구의야구공원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20	17,330	2008	생활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야구장	서울 교통공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84	5,194	2017	생활
노원구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야구장	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	76	5,400	2009	생활
노원구	육사야구장	국방부	노원구서비스공단	102	9,800	2016	생활
마포구	한강공원 망원지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800	2001	생활
마포구	난지 야구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122	20,490	2008	생활
양천구	목동 야구장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20	12,674	1989	전문
양천구	신월 야구공원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120	19,300	2008	생활
양천구	안양천 야구장	양천구	양천구	120	26,240	1995	생활
송파구	잠실 야구장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탁(LG, 두산)	125	13,918	1982	전문
송파구	송파 유소년야구장	송파구	송파구	70	3,025	2009	생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서울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22	12,447	2015	전문
강동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야구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40	5,250	2008	생활
강동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야구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70	5,850	2009	생활

첨부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육행사: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 단, 상업적 목적(광고, 방송 등) 행사는 제외한다.
3.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문화예술행사: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
5.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